

만 65세 이상 노인 70% 기초연금 최대 20만원 지급

교통·해양

▲**인천공항까지 KTX 바로 연결** =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KTX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는 하루 왕복 10차례 운행된다. 인천 지역 주민은 다른 지방에 갈 때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검암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다.

▲**푸드트럭 구조변경 가능** = 7월부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다. 최소한의 적재공간(0.5m)과 안전·환경 시설을 갖추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 = 7월 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소비자가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 광고를 할 때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요금만 알려주어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를 합산해 불만을 샀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8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좌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조달·관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 7월 1일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에너지세율 조정** =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고자 조정된 에너지 세율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되고, 전기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등유 부생연료유1호·프로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 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기업

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 차단이 강화된다. 다만,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해 건전한 사업 활동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한다.

농림·축산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12월 1일부터 돼지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돼지고기 유통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실시한다.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명세서를 기록해야 한다.

▲**말산업특구 지정요건 완화** = 8월 1일부터 농어촌형 승마시설·승마장·말 생산·사육 농가를 합해 20곳 이상인 경우도 말산업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를 추가로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뿐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 때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 표시 의무화** = 전자파 인체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8월부터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된다. 휴대전화 제조사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에 따라 1등급, 2등급 중 하나를 제품 본체나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 도입** = 방송 프로그램별 음량 불일치에 따른 시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1월 28일부터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평균기준에 맞춰 제작·송출된다.

9월 25일부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 연체금 최대한도를 9%로 정한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중소기업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만 허용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9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허용된다.

사법·경찰

▲**배임수·증제,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시행** = 1일부터 배임수제 및 배임증제, 변호사법 위반, 성매매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정략을

보건·복지

▲**만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돼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 기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다. 대상자의 90%에게는 20만원이, 나머지 10%에는 국민연금과 소득 등에 따라 최소 2만원까지 금액 지급된다.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은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인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본인부담 비용은 57만~64만원선이다.

문화·여성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을 거쳐 그 권리를 확보한 저작물이 일반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사용 가능했지만,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동안 컴퓨터로만 가능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 ... 유출땐 과징금 최대 5억원 부과

일반 화물차 푸드트럭 구조변경 가능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키로

돼지고기 유통 안전 확보 이력제 도입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행정·노동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처분기준 마련** = 9월 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식품분야에서 30시간 이상의 자격교육과 매년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간척지 이용범위를 여업으로 확대** = 9월 1일부터 어가의 소득확대를 돕기 위해 간척지를 여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R&D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 지금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관계없이 27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0월부터 이동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 금지** =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한 회사 대표도 징계 가능 대상에 포함** = 8월 7일부터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기관의 대표(임원)가 추가된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인하** =

만고 1억원 이상을 받으면 최고 징역 3~5년에 처해진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한 경우 처벌 기준 요인이 있으면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된다.

▲**아동보호 절차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 절차 신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9월 29일부터 아동보호 절차, 피해아동 보호명령 절차가 신설된다. 이는 가정보호 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범원의 보호 처분 또는 보호명령으로 친권이 제한·정지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임시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다.

▲**학대피해 아동에 국선변호사 지원** =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던 국선변호인·진술조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개원 5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타운 내 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개원 5주년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축하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돼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전남 달라지는 것들

▲**일부 용도지역 내 건축규제 방식 전환 등 규제 완화** = 제1종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체험관 건축이 허용되고 방재지구 내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완화되고 1종일반주거지역과 미관지구에서 각각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건축이 허용된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추진** = 중증장애인이 가구에 화재·가스 센서를 설치하는 등 응급 상황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정보 사전 정보 공표 확대** =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며 행정감사에 필요한 정보 510건 이상이 공개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절차 간소화** =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된 면적이 줄거나 총 면적이 1만㎡ 미만 늘어날 경우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재승인에서 시·도지사가 해제하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또한, 집단화면 농지와 분리된 2만㎡ 미

만의 자투리 토지는 별도 심사없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하다.

▲**섬 주민 차량운임 지원** = 기존 여객선 운임만 지원하던 것에서 섬 주민의 교육, 의료 목적 등 필수 생계수단으로 차량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운임도 지원한다. 섬 주민이 부담하는 차량운임의 20%를 지원하며 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국산차량으로 2천500CC미만 승용차, 5t미만 화물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다.

▲**매달 첫 번째 토요일 '박물관·미술관 가는 날'** = 도민에게 실질적인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전시 시설 활성화를 위해 매달 첫 번째 토요일을 박물관, 미술관 가는 날로 지정, 운영한다. 도내

공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38곳이 대상이며 입장료는 무료로 할인되며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변경** =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가로 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범위내에서 최대 10m까지, 세로크기는 아래층의 창문위·위층까지였다. 변경된 내용은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80%범위 내에서 최대 10m, 세로크기는 최대 1.2m 이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등 기초급여를 일괄지급했으나 10월부터는 생계나 주거, 의료 등 급여별 기준을 달리 적용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수

준도 재설정해 운영한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 근로를 하는 기초수급자 가구중 근로,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가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했다면 가입대상이 차상위가구까지 확대된 희망키움통장(II)이 신설, 운영된다.

▲**치매특별등급 신설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실시 = 수혜 대상자가 제한적인 현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3등급)가 5등급으로 확대 개편돼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됐다.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주소지 제한 폐지**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만 무료 접종을 받았던 65

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방문하기 쉬운 주변 보건소에서 접종 받을 수 있다.

▲**구급차 운용 등록사항 등 변경** =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등이 구급차를 운용하려면 구급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한다.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도 재조정됐다. 일반 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10km) 3만원에, km당 추가요금 1000원이다. 구급차 내 미터기와 카드결제기 설치도 의무화됐다.

▲**결핵검사 등 환자관리 강화** = 객담검사 양성자에 한해 결핵검사 실시 및 환자가 입원한 의료기관 소재 보건소에서 환자를 관리하던 것을 접촉자의 음성자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환자발생시 잠복결핵 검사실시 및 환자를 주소지 기준으로 관리한다.

▲**미용업(손톱·발톱) 신설** = 미용업이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 등 3개 분야에서 미용업(손톱·발톱)이 신설돼 4개 분야로 세분화된다. 손톱과 발톱 미용업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학과 졸업이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의한 미용사(내일)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매월 첫주 토요일 '박물관·미술관 가는 날'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주소지 제한 폐지